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행 2010. 10. 2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7호, 2010. 10. 29.,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임상시험의 계획·시행·실시·모니터링·자료의 기록 및 분석·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이 적정하게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다기관임상시험(Multicenter Trial)"이라 함은 하나의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 3. "비임상시험(Nonclinical Study)"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적 연구를 말한다.
- 4.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이하 "계획서"라 한다)"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 상시험의 목적·대상·시험(연구)방법론·통계학적 측면 및 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 5. "임상시험변경계획서(Protocol Amendment, 이하 "변경계획서"라 한다)"라 함은 계획서의 변경 내용 또는 불명료한 부분이 명확히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 6.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라 함은 개개 피험자별로 계획서에서 규정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 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안한 인쇄되거나 전자 문서화된 서식을 말한다.
- 7. "임상시험결과보고서(Clinical Trial/Study Report, 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라 함은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하나의 문서로 통합 기술한 것을 말한다.
- 8. "중간임상시험결과보고서(Interim Clinical Trial/Study Report, 이하 "중간보고서"라 한다)"라 함은 임상시험 도 중에 실시된 분석에 따라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 9. "임상시험용의료기기(Investigational Device)"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대조기기를 말한다.
- 10. "시험기기"라 함은 임상시험용의료기기 중 대조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11. "대조기기(Comparator)"이라 함은 시험기기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의품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말한다.
- 12. "이상반응(Adverse Event, AE)"이라 함은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후(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이상의료기기반응(Adverse Device Effect, ADE)"이라 함은 임상시험용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4.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Serious AE/ADE)"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상반응 또는 이상의료기기반응 중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나.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다. 지속적 또는 의미 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15. "예상하지 못한 이상의료기기반응(Unexpected Adverse Device Effect)"이라 함은 이용가능한 의료기기 관련 정보(예를 들어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비추어 이상의료기기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 16. "피험자(Subject/Trial Subject)"라 함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7.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라 함은 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예: 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또는 연구소 근무자, 제조업소 직원, 군인, 수감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집단시설에수용 중인 자,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자, 난민, 미성년자, 자유의지에 의해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를 말한다.
- 18. "피험자의 복지(Well-being of the trial subjects)"라 함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육체적·정신적 안녕을 말한다.
- 19. "피험자식별코드(Subject Identification Code)"라 함은 피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책임자가 각각의 피험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기호로서, 시험책임자가 이상반응 또는 기타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고할 경우 피험자의 성명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 "임상시험실시기관(Institution, 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연구기관으로 실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기관을 말한다.
- 2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 22. "신속심사(Expedite Review)"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상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해진 회의일 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23. "임상시험계약서(Contract, 이하 "계약서"라 한다)"라 함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서면 합의서로서 업무의 위임 및 분담, 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재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되고 날짜 및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 24. "시험자(Investigator)"라 함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임상시험조정자를 말한다.
- 25.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라 함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6.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라 함은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7.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라 함은 다기관임상시험의 수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조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28.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 이하 "시험조정자"라 한다)"라 함은 각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 중에서 다기관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29.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관리자(Investigational Device Manager, 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의료기사로서 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0. "피험자동의(Informed Consent, 이하 "동의"라 한다)"라 함은 피험자가 임상시험 참여 유무를 결정하기 전에 피험자를 위한 설명서(이하 "피험자설명서"라 한다)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31.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피험자나 피험자의 법정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 자를 말한다.
- 32. "법정 대리인(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이라 함은 피험자의 친권자·배우자·후견인으로서, 피험자를 대신하여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3. "임상시험의뢰자(Sponsor, 이하 "의뢰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시험의 계획·관리·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34. "임상시험모니터요원(Monitor, 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해 의뢰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5.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함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36. "모니터링보고서(Monitoring Report)"라 함은 모니터요원이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각 시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락(예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 서를 말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37. "근거자료(Source Data)"라 함은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관찰·기타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38. "근거문서(Source Document)"라 함은 병원기록·의무기록·피험자기록·메모·병리검사결과·피험자일기 또는 평가점검표·의료기기 불출 기록·자동화 검사기기에 기록된 자료·검사인증서 및 공식 사본·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 필름·방사선학적 검사자료·자기테이프·병리검사실기록자료 등과 같이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자료·기록을 말한다.
- 39.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직접열람(Direct Access, 이하 "직접열람"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상시험 수행 상태 및 결과 평가에 중요한 기록이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조사·분석·평가·재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은 피험자의 신원이나 의뢰자 관련 정보에 대해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 40.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라 함은 자료의 직접열람이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피험자의 신원 또는 의뢰자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1. "임상시험기본문서(Essential Document, 이하 "기본문서"라 한다)"라 함은 임상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어 진 자료의 질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전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말한다.
- 42.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라 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43.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라 함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
- 44. "임상시험자자료집(Investigator's Brochure)"이라 함은 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관련된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 45. "관련규정(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이라 함은 임상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 규정, 고시(이 기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46. "임상시험의 준수(Compliance, 이하 "준수"라 한다)"라 함은 계획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47. "실태조사(Inspection)"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기록 등을 현장 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8. "점검(Audit)"이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 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 는 조사를 말한다.
- 49. "점검확인서(Audit Certificate)"란 점검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말한다.
- 50. "자료모니터링위원회(Independent Data-Monitoring Commitee, IDMC)"라 함은 주기적으로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 안전성 관련 자료, 중요한 유효성 결과 변수를 평가하고, 해당 임상시험의 계속 진행, 변경 또는 중지를 의뢰자에게 권고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말하며, 의뢰자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기본원칙) 임상시험실시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2. 임상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는 우선 검토의 대상으로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 4. 해당 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및 비임상 관련 정보는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 5.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 6.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7.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등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8.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 9. 임상시험 참여 전에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처리·보존되어야 한다.
- 11. 피험자의 신원에 관한 모든 기록은 비밀보장이 되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 12. 임상시험용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 13. 임상시험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적용한다.

제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

제5조(임상시험의 계약) ① 의뢰자는 시험기관의 장과 문서로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기관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되는 하나의 시험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제6조(시험기관의 장의 임무) ① 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할 심사위원회를 제8조제1항에 적합하게 시험기관에 설치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험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실, 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긴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험기관의 직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다기관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기관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1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 받은 기록 및 자료 중 다른 법령에서 특히 보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의 임무) ① 심사위원회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해야 하며,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1. 임상시험(변경)계획서
- 2.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정보(피험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3. 임상시험자자료집
- 4. 안전성 정보
- 5. 시험책임자의 최근 이력 또는 기타 경력에 관한 문서
- 6. 표준작업지침서 등 심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 ③ 심사위원회는 시험책임자가 제출한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검토하고, 임상시험의 명칭, 검토한 문서, 날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기록하여 문서 화하여야 한다.
- 1. 승인 또는 시정승인
- 2. 보완
- 3. 반려
- 4.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 또는 보류
- ④ 심사위원회는 시험책임자의 최근 이력 및 기타 경력에 관한 문서로부터 시험책임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실시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주기는 피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하거나 피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임상시험은 해당 임상시험의 조기종료나 일시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시험기관의 장 및 시험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결정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시험책임자에게서 적절히 보고를 받거나 진행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⑦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서 정한 동의를 위한 설명 내용 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⑧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그 보상액 및 보상 방법과 금전적 보상이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적 보상은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에 끝까지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피험자에게 보상해서는 아니 된다.
- ⑨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그 지급방법·금액·지급시기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정보가 피험자설명서 또는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에 사전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을 종료하지 못한 피험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확인하여야 한다.
- 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신속 보고된 이상반응의 조치
- 2. 임상시험 종료 보고에 대한 처리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의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
- 4. 모니터요원의 변경·시험담당자의 변경·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과 같이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 5.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사
- 6. 기타 임상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의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 ① 심사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임상시험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음.
- 2. 피험자의 시험참가 동의를 적절하게 얻지 않음.
- 3.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의료기기 반응이 나타남.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심사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책임자로부터 해당 임상시험의 완료 (조기종료를 포함한다)를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자료나 문서를 제6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①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또는 의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1인 이상과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험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명단과 이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활동과 회의에 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이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사전 고지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한한다.
- ⑦ 시험책임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작업지침서를 준수하여 한다.

- 1.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자격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 2. 회의 소집, 일정 및 진행방법
- 3. 임상시험의 최초 및 지속적 검토의 수행 방법
- 4. 필요한 경우, 지속적 검토의 빈도 결정에 관한 사항
- 5.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속심사 및 현재 실시 중인 임상시험의 사소한 변경(minor change)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계획서 등의 승인이전에 피험자를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것
- 7.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모니터요원의 변경·시험담당자의 변경·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내려 지기 이전에 원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 8. 시험책임자가 심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조치방법
 - 가.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야만 하는 사항
 - 나. 피험자에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 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에 관한 사항
 - 라. 피험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
- 9. 심사위원회가 시험책임자에게 문서로 신속히 알려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 가. 임상시험과 관련된 결정이나 의견, 근거 및 통보절차
 - 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
- 10.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조(다기관 임상시험에서의 심사위원회) ① 임상시험을 복수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기관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이하 '공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거나 개별 시험기관 내의 심사위원 회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공동심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은 해당 임상시험의 개별 시험기관 내의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시험자

- 제11조(시험자의 자격요건 등) ① 시험자는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의뢰자·심사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이력서나 기타관련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시험자는 계획서, 임상시험자자료집, 의뢰자가 제공한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시험자는 이 기준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시험책임자는 둘 이상의 임상시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임상시험이 다른 임상시험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시험담당자들에게 위임한 경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자원 확보) ① 시험책임자는 과거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의뢰자와 합의한 피험자 등재 기간 내에 해당 임상시험에서 요구되는 피험자를 등재시킬 수 있음을 타당하게 입증하고,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와 합의한 임상시험 기간 동안 해당 임상시험을 적절히 수행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 ③ 시험책임자는 예상되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해당 임상시험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춘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와 적합한 장비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험책임자는 시험담당자들이 계획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무 및 업무 등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험자에 의한 피험자의 보호) ①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의 모든 의학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②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해 임상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피험자의 건강상태, 증상, 연령, 성별 및 동의능력 등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피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임상시험 중 또는 임상시험 이후에도, 시험책임자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해 피험자가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험책임자가 알게 된 피험자의 병발질환에 대해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피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피험자의 주치의가 있는 경우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의 합의하에 해당 주치의에게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권장된다.
- ⑤ 피험자가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그만 둘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사위원회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책임자는 계획서, 동의서(개정 동의서를 포함한다), 피험자 확보 방법(예; 광고 등) 및 피험자설명서 등 기타 피험자에게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날짜와 결정사항이 명기된 심사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시험책임자는 해당임상시험의 실시가 승인된 경우(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통보서의 내용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받아 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험책임자는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받고자 할 경우 최신의 임상시험자자료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임상시험자자료집이 해당 임상시험 도중에 개정될 경우 시험책임자는 개정된 임상시험자자료집 사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임상시험 도중 시험책임자는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계획서 준수) ① 시험자는 의뢰자와 합의되고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득한 계획서를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책임자와 의뢰자는 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서에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와의 사전 합의,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승인 이전에는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승인을 얻기 이전에라도 변경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수 있다.
 - 1.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2. 모니터요원의 변경·시험담당자의 변경·응급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 3. 명백히 피험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시술의 추가 또는 삭제가 아니거나 주요결과변수의 변경 등과 같이 해당임상시험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서 변경이 아닌 것으로서 해당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
 - ③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는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와 함께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④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시험책임자가 변경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빨리 해당 사실 및 실시 사유가 기록된 문서와 변경계획서를 의뢰자, 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각각 합의 및 승인을받아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6조(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관리)** ①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와 관리자에게 있다.
 - ② 관리자 또는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 (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대해 인수, 재고 관리, 피험자별 적용방법과 적용시간,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에는 각 피험자별로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적용기간,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사용 (유효)기간(필요한 경우에 한함) 및 피험자식별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관리자 등은 각 피험자가 계획서에 명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각 피험자에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유지하고,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재고가 사용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피험자동의) ①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 할 때, 시험책임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피험자의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 관련 정보가 수집되면,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전자문서를 포함한다.)된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피험자의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시험책임자는 적시에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③ 시험책임자나 시험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 또는 참여를 지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 ④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과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는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시험자 또는 시험기관, 의뢰자나 의뢰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무를 소홀히 한책임을 면제받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등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서면 정보를 포함하여 임상시험의 제 측면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 또는 피험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 ⑥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과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사용된 용어는 피험자, 법정 대리인 또는 공정한 입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이어야 한다.
 - ⑦ 동의를 얻기 전에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등은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임상시험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임상시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모든 임상시험 관련 질문에 대해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어야 한다.
 - ⑧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피험자(또는 법정 대리인)와 동의를 받은 시험책임자(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등)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⑨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읽어 주고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구두로 동의하고 가능하다면 동의서 서식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공정한 입회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정한 입회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기 전에 동의서서 식과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되었고, 이들이 해당 사실을 이해하였다는 것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⑩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문서화된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기타 문서화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임상시험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 2. 임상시험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사항
- 3.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및 시험기기 또는 대조기기에 무작위배정될 확률
- 4. 침습적 시술(Invasive procedure)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 5. 피험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
- 6.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실험적인 측면
- 7. 피험자(임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태아,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 8. 기대되는 이익 또는 피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
- 9.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나 종류 및 이러한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 10.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험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 11.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 및 이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 12.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 13.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피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이 없이도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 14. 모니터요원,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피험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의무기록을 직접열람할 수 있 다는 사실과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열람을 허용함을 의 미한다는 사실
- 15. 피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
- 16. 피험자의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적시에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
- 17.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접촉해야 하는 사람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임상시험 도중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 19. 피험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 20.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피험자 수
- ①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피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동의서의 사본이나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보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 도중에 동의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은 자필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변경동의서의 사본을 받아야 하며, 이미 피험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문서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 ①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과 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한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는 피험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피험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사전에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는 동석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사전에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피험자의 임상시험 등재 방법이 계획서나 기타 관련 문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심사위원회로부터 문서로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가능한 조기에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기록 및 보고) ①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증례기록서나 다른 모든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가 정확하고, 완결되며, 읽기 쉽고 시기 적절한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
 - ② 근거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증례기록서에 기재된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③ 문서화 또는 전자화된 증례기록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하는 자는 의뢰자가 제공한 수정 지침에 따라 원래의 기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수정일과 서명 및 수정 이유를 기술함으로써 점검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뢰자는 시험책임자나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증례기록서 상의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고 모니터요원 등 의뢰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증례기록서 상의 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할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상황과 이를 문서화하는 방법 및 사후에 시험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 등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시험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나 정정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시험책임자는 기본문서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임상시험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이후에는 이들 문서를 제6조제6항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9조(진행상황 보고) ① 시험책임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의 진행상황에 관한 서면 요약을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뢰자 또는 심사위원회에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안전성 관련 사항의 보고) ① 시험책임자는 계획서나 임상시험자자료집 등에서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을 즉시 의뢰자에게 알려야 하고, 계획서에 기술한 기일 내에 문서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추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및 상세 보고에는 피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는 대신 피험자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하며,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의 보고에 관한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시험책임자는 안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계획서에서 명시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이나 실험실검사치의 이상 등에 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및 보고 방법에 따라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망예를 보고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와 심사위원회에게 부검보고서(부검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와 사망진단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상시험의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①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의 사전합의 없이 임상시험을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 및 심사위원회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심사위원회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가 임상시험을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임상시험이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적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임상시험 완료보고)** 임상시험이 완료(조기종료를 포함한다)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결과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시험 완료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임상시험의뢰자

- 제23조(의학적 자문) 의뢰자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료적 문제나 의문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 제24조(임상시험설계) 의뢰자는 계획서 및 증례기록서의 설계와 분석계획 수립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중간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이르는 임상시험의 전 단계에 걸쳐 생물통계전문가, 의료기기전문가 또는 의사 등 적절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5조(임상시험의 관리) ① 의뢰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수행의 전반을 감독하고, 자료의 처리와 검증, 통계적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의뢰자는 안전성 관련 자료와 중요한 유효성 결과변수를 포함한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임상시험의 계속 진행, 변경 또는 중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독립적인 자료모니터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료모니터링위원회는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보유하고, 회의록을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기록보존)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한 의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기본문서 및 기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거나 의뢰자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②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임상개발이 중단된 경우, 의뢰자는 시험자, 시험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의뢰자는 자료의 보존 필요성 및 보존 기간에 대해 시험자 및 시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하고, 더 이상 자료의 보존이 필요없다고 의뢰자가 판단한 경우 의뢰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문서로 시험책임자 및 시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7조(시험책임자 선정) ① 의뢰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이 있으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자를 시험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기관임상시험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조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험기관의 장과 임상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자는 시험책임자에게 계획서와 최신의 임상시험자자료집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책임자가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계획서와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의뢰자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 1. 관련규정,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의 승인 사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 2. 자료의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할 것
 - 3.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에 응할 것
 - 4. 의뢰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문서로 통지하기 전까지 해당 임상시험 관련 기본문서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
 - ④ 의뢰자, 시험책임자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획서 또는 계약서 등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28조(임무의 할당)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임상시험과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정의하고 설정하며 이를 적절히 할당하여야 한다.
- 제29조(피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한 피험자의 치료비 등을 제공하는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피험자에 대한 보상은 제17조제10항제10호에서 정한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 변경계획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확인) 의뢰자는 시험책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자격에 관한 문서
- 2. 심사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책임자가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통보서
- 4.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장의 확인서
- 5. 이미 승인되어 시행중인 임상시험의 실시 중지(일시중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통보서
- 제32조(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 계획시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의 결과에서 얻어진 정보가 해당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시험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발생 가능한 위험·이상반응 및 특정검사·관찰·주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임상시험자자료집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의뢰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이에 따라 임상시험자자료집을 수정하여 야 한다.
- 제33조(임상시험용의료기기 제조, 포장, 표시기재) ① 의뢰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조된 것으로 서 개발단계에서 전기·기계적,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한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방법, 적용기간, 유효기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을 결정하여 야 하며, 이를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운송, 보관이나 저장과정에서 손상,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④ 임상시험 실시 중인 의료기기의 설계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의뢰자는 이러한 변경이 당해 의료기기의 안 전성·유효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공급 및 취급)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관리자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계획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심사위원회의 승인(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기 이전에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관리자 등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의뢰자는 관리자 등이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 절차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인수·취급·보관·미사용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피험자로부터의 반납 및 의뢰자에 대한 반납 등에 대한 방법이 포함되어야한다.
- ④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으로의 공급, 시험기관의 인수, 시험기관으로부터의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상시험의 완료(조기종료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의료기기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5조(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에 관한 사항을 계획서 또는 기타 합의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피험자가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한다.
- **제36조(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①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피험자의 안전, 임상시험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할 만한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관련된 시험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이상반응의 보고)** ① 의뢰자는 시험자,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의료기기반응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경우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뢰자가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② 의뢰자는 제1항의 보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해당 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이상반응의 소실 또는 추적조사의 불가 등)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의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이상반응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상반응보고서에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모니터링) ① 모니터링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 2. 보고된 임상시험 관련 자료가 근거문서와 대조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3.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획서, 이 기준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
- ② 모니터요원의 선정과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요원은 의뢰자가 지정한다.
- 2. 모니터요원은 해당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 과학적 또는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3. 모니터요원은 임상시험용의료기기·계획서·동의서 서식·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이 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의뢰자는 임상시험이 적절히 모니터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의 목적, 설계, 복잡성, 피험자 수 및 결과변수 등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의 적절한 범위와 성격을 정하여야 한다.
- ④ 모니터요원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임상시험이 적절히 실시되고 관련 사항이 문서화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의뢰자와 시험자 사이의 주요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
- 2.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기간 동안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3. 임상시험용의료기기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확인
 - 가. 저장조건이 적절하고, 사용(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들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
 - 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피험자에게만 계획서에 명시된 적용기간,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
 - 다. 피험자가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보관·반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지의 여부
 - 라.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인수·사용·의뢰자로의 반납 등이 적절히 관리되고 문서화되는지의 여부
- 4. 시험자가 승인된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5.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이전에 동의서가 얻어졌는지의 여부 확인
- 6. 시험자가 임상시험을 적절히 실시하고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신의 임상시험자 자료집 및 문서,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 포함한 기타 공급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7. 시험자가 임상시험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8. 시험자가 특정한 임상시험관련 기능을 계획서 및 의뢰자와 시험기관의 장 또는 시험책임자와 합의한 문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러한 기능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
- 9. 시험책임자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피험자만을 임상시험에 참여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10. 피험자 등재율에 대한 보고
- 11. 근거문서 및 기타 임상시험관련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12. 시험자가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통보서·신청서 등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들이 어떠한 임상시험과 관련되었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읽을 수 있고, 날짜가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13. 증례기록서상의 기재 내용, 근거문서 및 기타 임상시험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검토와 이들의 상호 대조로부터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및 각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
 - 가. 계획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증례기록서에 정확히 기재 또는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이 근거문서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
 - 나. 적용기간이나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의 변동사항이 각 피험자별로 적절히 문서화되고 있는지의 여부
 - 다. 이상반응, 병용요법 및 병발질환이 계획서에 따라 증례기록서상에 기재 또는 보고되고 있는지의 여부
 - 라. 피험자가 지키지 못한 방문 및 실시하지 않은 실험실적 또는 임상적 검사가 증례기록서상에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 또는 보고되고 있는지의 여부
 - 마.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가 탈락 또는 탈퇴한 모든 사실이 증례기록서상에 기재 또는 보고되고 그 이유가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증례기록서상의 오류, 생략 및 읽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시험자에게 알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날짜, 필요한 경우 사유, 시험책임자 또는 증례기록서상의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시험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정정이나 첨삭이 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이 경우 권한의 위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5. 모든 이상반응이 이 기준·계획서·심사위원회·의뢰자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기간내에 적절하게 보고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16. 시험책임자가 기본문서를 보존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17.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험책임자에게 알리고, 이러한 미준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
- ⑤ 모니터요원은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와 특정 임상시험을 위하여 의뢰자가 작성한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모니터링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요원은 시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자와 접촉한 후 해당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날짜, 장소, 모니터요원의 이름, 시험자 또는 접촉한 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모니터링보고서는 모니터요원이 검토한 내용의 요약 및 중요한 발견 또는 사실, 계획서 등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문제점, 결론, 계획서 등의 준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또는 조치할 사항 등에 관한 모니터요원의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의뢰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제39조(미준수) 시험자 또는 의뢰자가 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이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뢰자는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임상시험이 종료된 경우 의뢰자는「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 약품안전청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1조(다기관임상시험) 의뢰자는 다기관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모든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와 합의하고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 2. 증례기록서가 모든 시험기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이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시험책임자에게는 이러한 추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에 적합한 증례기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시험자의 임무가 임상시험 실시 이전에 문서화되었는지의 여부
 - 4. 모든 시험책임자가 계획서의 준수, 임상검사 및 실험실적 검사의 평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준수 및 증례기록 서의 정확한 기록을 위한 지침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5. 시험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의 여부

제6장 보칙

- 제42조(실태조사 및 직접열람)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의 장, 심사위원회, 시험자 또는 의뢰자 등(이하 동 조에서는 "임상시험관련자"라 한다)의 모든 시설·문서(전자문서 포함)·기록 등을 현장에서 실태조사 할 수 있다.
 - ② 임상시험관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직접열람, 문서의 제공 및 실태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기본문서) 기본문서의 종류, 목적 및 문서별 보존장소는 별표와 같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7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77호,2010.10.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